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08호

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60호(2002.7.2.)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374호(2003.11.18.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558호(2005.4.21)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호(2015.6.11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을 변경 결정하고,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,
2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15호(2016.10.13.)로 고시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이 일부 착오사항이 있어 이를 정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4월 12일
서울특별시장

I.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

□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변경

1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 (변경 없음)

지구명	유형	위치	면적(m ²)	지정목적
미아중심 재정비 촉진지구	중심지형	성북구 하월곡동 88일대 강북구 미아동 70일대	478,515m ²	•성장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상업유통업무정보 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육성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을 도모하고, 주거환경 정비 및 도시환경을 개선 하고, 서울 동북권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함

2. 재정비 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(변경 없음)
3. 재정비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(변경 없음)
4. 재정비촉진구역 및 준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(변경 없음)
 - 1) 촉진구역(변경 없음)
 - 2) 촉진계획(변경 없음)

- (1) 토지이용계획(변경 없음)
- (2) 건폐율·용적률·건축물의 높이 및 주용도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- (3) 정비기반시설 계획(변경 없음)
- (4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- (5) 기타사항(변경 없음)

5. 준치관리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
- 1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(변경 없음)
- 2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 - (1) 최대개발규모(변경 없음)
 - (2) 공동건축지정 기준(변경 없음)
 - (3) 획지의 규모 및 구성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	가구번호	획지번호	면적(m ²)	획지		공동건축
				위치	면적(m ²)	
기정	5	16	254	860-171	254	-
		17	136	70-11	136	-
		18	154	860-172	154	-
변경	5	16	408	860-171	254	-
				860-172	154	-
		17	136	70-11	136	-
		-	-	-	-	(삭제)

※획지5-16, 5-18외의 획지는 변경 없음

※변경된 획지5-16의 주차출입구는 건축물 규모, 보행환경 등을 감안하여 1개소만 설정

■ 변경사유

위치	변경 내용	변경 사유
강북구 미아동 860-171 외 1필지 (획지번호 5-16, 5-18)	○ 미아동 860-171, 172 각 필지마다 건축토록 된 획지 선을 하나의 획지로 변경	○ 미아동 860-171, 172는 각각 개발토록 획지계획이 되어있으나, ○ 최대개발규모(1,200m ² 이하) 및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두 개의 획지를 하나로 통합

■ 도면 정정사유

※위치 : 미아동 67-1외 4필지, 미아동 70-7외 4필지

※정정사유 : 기 고시된 내용 중 누락된 획지 및 공동건축선 표시

- (4) 건축물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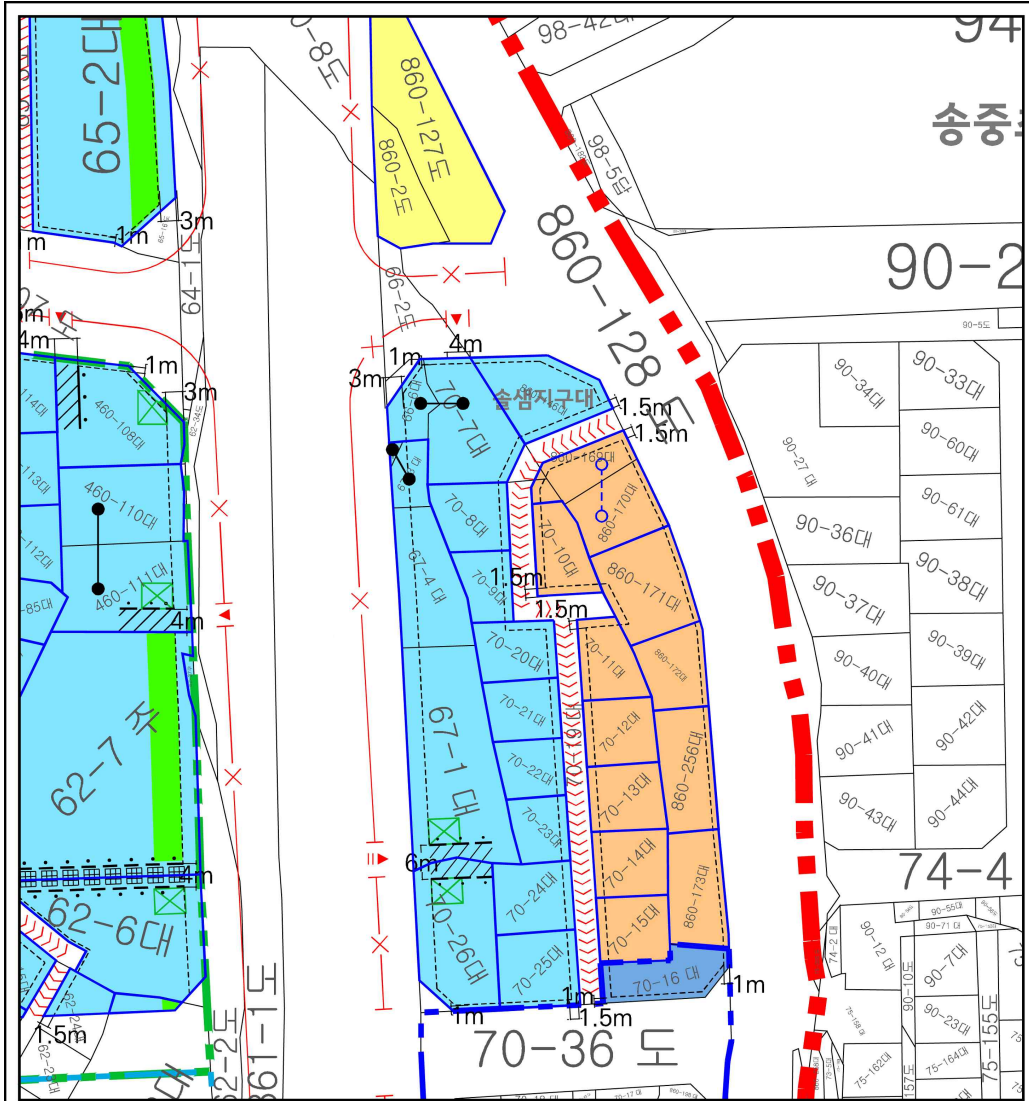
- (5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 없음)
- (6) 교통처리계획(변경 없음)
- (7) 존치관리구역 운영지침(변경 없음)

II. 관계도면 : 붙임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준비된 도면 참조)

※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.

III. 열람장소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☎02-2133-7217)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(☎02-901-6852, 6854)에 관계도서를 준비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○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기정)



미아중심 재정비촉진지구(강북구) 재정비촉진계획

- 미아동 860-171번지 외 1필지 -

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(기정)도

범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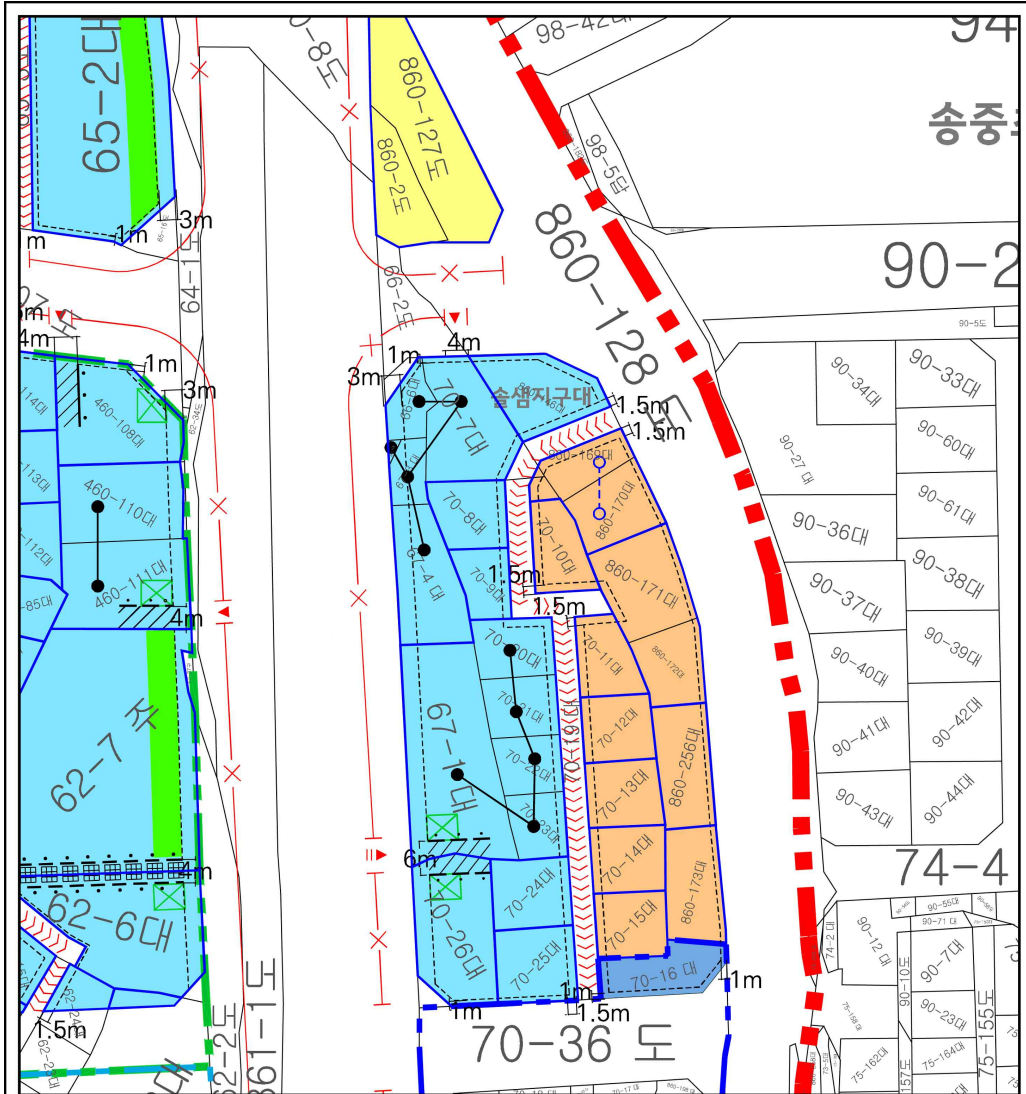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재정비촉진지구 촉진구역 특별계획구역 획지선 건축한계선 저층부벽면한계선 공공공지 보치용용도로 주차용도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개공지 별지공지 차량용도로지간 공동주차용도로 주차용도로 공동개발(지장) 공동개발(관장) 공공보행도로(지장)
--	---

대지 지침

준주거지역	MR1	30m	B	1,200㎡	최고높이 단층 기초연속 위용제한	차용도로 불하도로 최대차량규모
	MR2	30m	B	1,200㎡		
제1종일반 주거지역	GR1	30m	C	800㎡		

Scale = 1 : 1,000

○ 재정비촉진계획(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) 결정도(변경)



미아중심
재정비촉진지구(강북구)
재정비촉진계획
 - 미아동 860-171번지 외 1필지 -
획지 및 건축물등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범례

- 재정비촉진지구계
- 축간구역계
- 특별계획구역
- 획자선
- 건축한계선
- 자충부변한계선
- 공공공지
- 보차혼용도로
- 주차출입도로
- 공개공지
- 샘지공지
- 차량출입금지구간
- 공동주차출입구
- 주차출입구
- 공동개발(자정)
- 공동개발(관정)
- 공공보행동로(자정)

대지 지침

분주지침	MR1	40m	1,200V	B	최대높이 제한 허용용도	지정용도 용도지역 취락지역
	MR2	30m	1,200V	B		
재정비촉진 지구지침	GR1	40m	1,200V	C		
		30m	800V	C		

Scale = 1 : 1,000